

연구개발능률성과급 운영지침

2019.4.10 제정
2020.6. 1 개정
2022.4.21 개정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'본교'라고 한다) 소속 연구자 중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(이하 '성과급'이라고 한다)을 지급하여 연구비 수주 증대 기여, 연구활동 증진을 통해 연구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급대상) ① 성과급의 지급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한다.

② 독립채산기관 및 가속기연구소 수행과제는 대학의 지침을 준용하여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
③ 본교 간접비 배분 기준의 예외적용을 받는 집단연구 사업의 경우도 사업단(또는 센터)로 배정된 간접비 재원을 활용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조(지급재원) ① 성과급 예산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수입(공통비용 선 공제 후 총액)의 10% 이내로 하며, 해당연도 지급 재원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② 해당연도 성과급 지급 후 남는 재원은 차년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산학협력단장이 간접비 사용기준 내에서 별도 정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.

제4조(평가 및 지급시기) 평가는 산학협력단장이 연 1회 실시하며, 평가결과에 따라 매년 4월 중에 성과급을 지급한다.

제5조(평가방법) ① 평가는 전년도 회계연도에 입금된 간접비 실적을 기준으로 해당연도에 실시한다.

② 평가항목은 연구책임자의 간접비 기여실적과 산학협력단장의 정성평가(논문, 특허, 학교, 산업체 기여 등 고려)로 한다.

산출방법	등급비율	성과급 지급비율
(간접비 기여실적+정성평가) x 지급비율	S: 상위 10%	100%
	A: 11%~30%	95%
	B: 31%~80%	90%
	C: 81%~100%	85%

제6조(지급방법) 성과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원천징수 후, 본 대학교 회계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책임자의 급여계좌로 지급한다.

제7조(지급제외) ①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연구과제(보조금 사업, 연구용역사업, 산업체 및 포스코 과제 등)

② 인력양성 등 학과 단위별 대표사업(BK21사업, ICT명품인재양성사업 등)

- ③ 성과급 지급 시점에 이직·퇴직한 연구책임자가 수행한 연구과제
- ④ 성과급 지급 시점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연구책임자가 수행한 연구과제
- ⑤ 연구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대학(산학협력단)에 행·재정적 손해를 끼친 경우
- ⑥ 본교의 간접비 반영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연구과제
- ⑦ 연구책임자가 지급제외를 요청한 연구과제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2019년 1월 1일 이후 협약과제 중 제2조(지급대상)의 적용대상 과제는 전산시스템에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예산을 반영하여 차년도 평가 시 지급하고, 2018년 회계연도에 간접비 회계로 간접비 수입이 진출된 과제는 이 지침에 따라 2019년도에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